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근거 등 마련〉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04362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안 제5조제3항)	3
2.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근거 등 마련(안 제19조)	6
(1) 초과세입을 통한 채무상환(안 제19조제1항)	6
(2) 세계잉여금을 통한 채무 상환(안 제19조제2항, 제3항)	8
(3) 세계잉여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 (안 제19조제4항, 제5항)	14
(4)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적립 방식·절차 (안 제19조제6항, 제7항)	19
(5)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등(안 제19조제8항·제9항·제10항)	22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자금 전용 근거 마련(안 제39조)	25
4.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의 작성기한 현실화(안 제17조)	27
5. 회계관계 공무원의 범위 확대 등(안 제46조·제48조·제50조)	30
(1) 회계관계공무원에 통합지출관을 추가	30
(2) 다른 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절차 간소화	31
(3) 재정보증 대상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를 추가	33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출연월일 : 2024. 9. 26.
3. 회부연월일 : 2024. 9.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이용하여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이월금을 뺀 금액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을 지방채의 원리금 외에도 보증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책임을 지게 된 금액 등의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종전에는 다른 회계로부터만 자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

화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검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잉여금을 계획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결산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금액)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및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을 뺀 금액을 의미함¹⁾.

최근 10년간 국가의 세계잉여금은 연평균 8.1조원 규모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잉여금 규모는 30.2조원으로 큰 규모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세계잉여금]

(단위: 조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국가 세계잉여금	-0.8	2.8	8.0	11.3	13.2	2.1	9.4	23.3	9.1	2.7	8.1
지방자치단체 세계잉여금	20.8	27.7	34.2	32.5	35.0	32.1	32.1	31.5	31.2	25.2	30.2

자료: 행정안전부

- 1)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용어를 사용하지만 「국가재정법」 제90조 등에 맞추어 세계잉여금으로 용어를 통일함.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잉여금을 예산 외로 채무 상황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채무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며, 채무 상환 이후 남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조례에 따라 예산 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잉여금 증가분 중 일정 비율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세계잉여금 처리방식 개정]

현행	개정
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전체) 세계잉여금을 예산 외로 채무 상환에 사용 가능 ▶(채무 과다 지자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에 사용 * 채무 ÷ 세입결산액(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교부금)이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지자체
	↓ ▶(전체) 채무 상환 이후 남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조례에 따라 예산 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 가능 ▶(세계잉여금 과다 지자체*) 채무 상환 이후 남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서 3년 평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뺀 금액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 * 직전 3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평균 금액의 1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지자체
	↓ ▶남은 금액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자료: 행정안전부

그 밖에 개정안에는 지역통합재정 통계 작성기일을 현실화하고(안 제17조), 일반·특별회계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외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39조), 회계공무원 범위 확대 등(안 제46조, 제48조, 제50조)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조항	내용
안 제19조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거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근거 등 마련
안 제39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자금 전용 근거 마련
안 제17조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의 작성기일 현실화
안 제46조, 제48조, 제5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확대 등

최근 국세 수입의 감소 등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사용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세계잉여금 등을 통한 채무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 등

(1) 초과세입을 통한 채무상환

개정안 제1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초과세입을 이용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원리금을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u>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u> <u>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u> <u>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u>	<u>제19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이용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원리금을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부터 적용한다.	

초과세입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전망한 세입보다 많은 세입을 의미함. 초과세입 부분은 사전에 수립한 예산의 지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시점에 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한 지출 대상(예: 재난 피해 복구)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초과세입의 지출 용도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므로 예산집행의 효과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지방재정법」 제11조2)에 따른 지방채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음. 지방채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지방채 규모는 38조 5,644억원 규모임.

연도별 지방채 현황(2014년~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방채 현황 (억원)	251,042	298,183	359,481	381,672	384,619

자료: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 186면에서 재인용

개정안을 통해 초과세입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원리금을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면, 초과세입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합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 6. (생략)

유사입법례로 「국가재정법」 제90조제1항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填)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이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에는 초과세수 중 2조 5000 억원은 국채물량을 축소하는데 사용함⁴⁾.

(2) 세계잉여금을 통한 채무 상환

개정안 제19조제2항은 ‘세계잉여금’의 개념을 약칭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책임을 지는 보증채무 등의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개정안 제19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재원(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대비 채무(지방채 등)의 비율이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다만, 채무 상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정함(안 제19조제3항).

3)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填)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4) 서울신문 2021년 11월 23일 기사, “논란의 초과세수 19조원 사용처 정리한 홍남기…소상공인 지원 ‘미흡’ 지적도” 출처: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1/11/23/20211123500177>

현행	개정안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제19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②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및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을 뺀 금액[이하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원리금 2.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책임을 지게 된 금액 3.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채무의 합계액(「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원리금과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이자는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결산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지방자

	<u>치단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2항 각 호의 채무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 상환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 1. <u>해당 회계연도의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의 결산액</u> 2. <u>해당 회계연도의 「지방행정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결산액</u> 3. <u>해당 회계연도의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결산액</u> 4. <u>해당 회계연도의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또는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결산액</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 제19조제2항은 약칭을 통해 세계잉여금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세계잉여금의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개정안 제19조제2항을 통해 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의 원리금 외에도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잉여금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⁵⁾.

5)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개정안 제19조제3항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경상재원 대비 채무비율이 10% 이상으로 정하는 있음. 경상재원 대비 채무비율 기준을 10%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재원 대비 채무비율 연평균 약 8%인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임.

[전체 지방자치단체 경상재원 대비 채무 비율(2022년, 2023년)]

구분	2022년 (통합공시 완료)	2023년 (통합공시 전)
○ 채무(분자)	19조 7,680억원	19조 1,488억원
- 지방채	19조 6,606억원	19조 463억원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1,055억원	1,024억원
- 채무부담행위	19억원	-
○ 경상재원 결산액(분모) (지방세+세외수입+교부세+교부금)	237조 9,817억원	233조 3,495억원
○ 경상재원 대비 채무 비율 (분자 ÷ 분모 × 100)	8.3%	8.2%

자료: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상재원 대비 채무비율이 1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에는 21개, 2023년에는 19개가 있음. 2022년 해당 21개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은 6조 5,145억원이고 채무의 합계액은 17조 8,763억원이며, 2023년 해당 19개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은 3조 5,663억원이고 채무의 합계액은 17조 3,466억원임.

[경상재원 대비 채무 비율이 1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현황]

	2022년	2023년
지방자치단체 개수	21개	19개
지방자치단체 목록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양주시, 아산시, 전주시, 포항시, 구미시, 창원시, 김해시, 하동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원시, 부천시, 양주시, 아산시, 전주시, 포항시, 구미시, 창원시, 김해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잉여금의 합계액	6조 5,145억원	3조 5,663억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합계액	17조 8,763억원	17조 3,466억원

자료: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개정안을 통해 경상재원 대비 채무비율이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잉여금 중 일정비율을 채무에 상환하도록 하는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 상환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를 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세계잉여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

개정안 제19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개정안 제19조제5항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 보다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서 채무 상환액 및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평균 금액을 뺀 금액(해당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채무상환액－직전 3년 세계잉여금 평균)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제19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④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u>에 사용할 수 있다.</u> <u>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u> <u>여진 금액</u> <u>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u> <u>이월금</u>	<u>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u> <u>계연도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u> <u>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일반</u> <u>회계 세계잉여금으로 나눈 비율</u> <u>이 100분의 110 이상의 범위에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u> <u>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회</u> <u>계연도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u> <u>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u> <u>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직전</u> <u>3개 회계연도의 평균 일반회계</u> <u>세계잉여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u> <u>5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u> <u>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u> <u>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u> <u>안정화 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임⁶⁾.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

개정안 제19조제4항을 통해 세계잉여금 중 채무상환에 사용되고 남은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잔여 세계잉여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정부가 2024년 9월 27일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개정안 제19조제5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의무적립 요건을 해당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직전 3개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평균 보다 10% 증가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7%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함.

또한, 동 조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비율을 채무상환 이후 남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계잉여

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금을 뺀 금액의 50%로 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함.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무적립 규정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 금액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②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하여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직전 회계연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자료: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보다 10% 이상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022년 136개(56.0%), 2023년 114개(46.9%)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직전 3개연도 평균보다 10% 이상 증가한 지방자치단체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직전 3개 연도 평균 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10% 이상 증가한 지방자치단체	136개	114개

자료: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제19조제5항과 차이가 있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비율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24년 9월 27일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16조제6항을 삭제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 개정안 제19조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같이 예외의 단서 규정을 규정할 필요

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적립 방식·절차

개정안 제19조제6항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사용하거나, 통합재정관리기금에 적립하는 것을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개정안 제19조제7항은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적립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한 때부터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안 제19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	제19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적립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적립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

<u>여진 금액</u>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u>이월금</u>	구하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결산서를 작성 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 원에게 검사를 의뢰한 때부터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 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 제19조제6항에서 규정한 회계의 세출과 관계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세계잉여금의 지출·적립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함.

개정안 제19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채무 상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5항에 따른 통합재정안정 화기금에 적립은 지방 재정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인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은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⁷⁾.

7)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 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 제19조제7항은 세계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게 검사를 의뢰한 때로 정한 것은 결산서 작성이 마쳐져야 결산상 잉여금 및 세계잉여금의 구체적인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가재정법」 제90조제7항은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⁸⁾.

(5)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등

개정안 제19조제8항은 결산상 잉여금(결산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금액)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이월금, 세계잉여금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입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9조제7항).

개정안 제19조제9항은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이월금, 세계잉여금 잔액을 직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이전이라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9조제9항).

개정안 제19조제10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기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9조제10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제19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⑧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3. 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 또는 적립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직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

	<u>산 이전이라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u> <u>⑩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제14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기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 제19조제8항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된다는 것을 명시하여 지방재정 세입에서 빠지지 않도록 명시한 것으로 보임.

「국가재정법」 제90조제8항은 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정하고 있음⁹⁾.

개정안 제19조제9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산 이전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는 금액, 「지방재정

9)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⑧ 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¹⁰⁾ 및 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 또는 적립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 제19조제10항에 따라 세계잉여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잉여금을 계획적으로 사용 또는 적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가재정법」 제90조제9항은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¹¹⁾.

10)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11)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자금 전용 근거 마련

개정안 제39조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에서 예산 집행에 따른 세출금을 뺀 차익)이 부족한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39조(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u>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u>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辨濟)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세계현금의 전용) ----- ----- ----- ----- <u>다른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의 자금을</u> 세입·세출 예산 또는 <u>기금운용계획 외로</u>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 제39조를 통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고금 관리법」 제31조제3항은 국고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관리를 하지 않는 회계·계정, 통합관리
 계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²⁾.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4.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의 작성기한 현실화

개정안은 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3월 21
 일(출납을 폐쇄하는 12월 31일 후 80일 이내¹³⁾)이 아닌 지방의회에 결
 산 승인을 요청하는 날인 5월 31일¹⁴⁾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 12) 「국고금 관리법」 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
 금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
 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
 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통합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 또는 기금운
 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회계·계정, 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 예
 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탁금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 또는 상호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1조(자금의 조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붙일 수 있다.
- 13)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
 회의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
 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 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 명세서 3. 이월 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 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 2. 유형자산 명세서 3. 감가상각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신 설>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는 날까지 작성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부터 적용한다.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

통계 보고서는 결산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보고서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작성한 각각의 결산서를 취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므로, 각각의 결산서와 동일한 시점에 작성되기 어려움.

결산서를 작성하는 시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3월 21일이며,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은 2월 28일임.

[지역통합재정통계의 기준이 되는 결산서 작성 기한]

작성기관	작성 기한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3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¹⁵⁾
교육청	3월 21일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교육부) ¹⁶⁾
지방공기업	2월 28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2항 ¹⁷⁾
출자·출연기관	2월 28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¹⁸⁾

15)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결산서 작성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17)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개정안은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의 작성기한을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는 날로 변경하고 있는데, 해당 날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5월 31일이므로 각각의 결산서를 취합하여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확대 등

(1) 회계관계공무원에 통합지출관을 추가

개정안 제46조는 회계관계공무원에 통합지출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 <u>재무관</u> ·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 <u>재무관·통합지출관</u>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부터 적용한다.

통합지출관은 「지방회계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임명되어 결산서의 작성,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 관리 및 출납원의 지도·감독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임¹⁹⁾. 현행 「지방회계법」 제46조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분임자(分任者)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통합지출관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통합지출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절차 간소화

19) 「지방회계법」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통합지출관)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출관은 회계관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법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개정안 제4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임명은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그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 중 해당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회계법」 제4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46조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다른 기관 소속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정안은 다른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명 절차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3) 재정보증 대상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를 추가

개정안 제50조는 재정보증 대상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1. 회계관계공무원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²⁰⁾ 에 해당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 제50조제1항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를 재정보증 대상에 추가하여 보조자가 출납 및 지출 등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여줌으로써 담당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는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¹⁾.

문 의 처

02) 6788-5338

20)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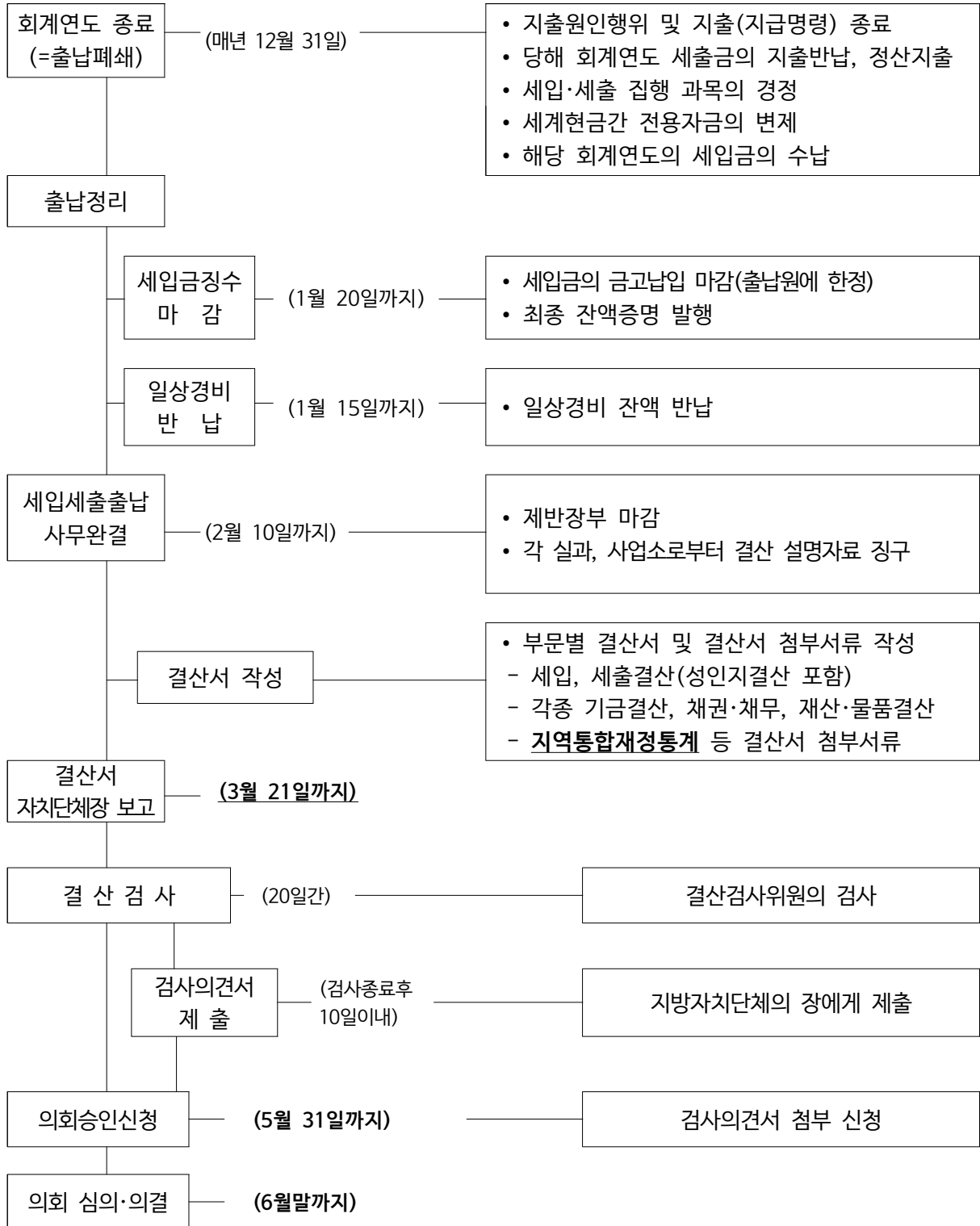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2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참고

지방자치단체 결산 절차



※ 자료 : 행정안전부